

학술대회 참가자 정산 매뉴얼

「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」 제9조 학술대회 참가지원에 의거, 해외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 시 정산 가이드라인을 안내 드립니다.

1. 지원 자격: 보건의료인 중 학술대회 주최자 측에서 선정한 발표자, 좌장, 토론자

- ① 발표자: 주저자를 포함한 공동저자 1인 지원 (최대 2인 지원 가능, 공동저자만 참석 시 지원 불가)
- ② 포스터, E-포스터: 발표 자격 및 발표 시간이 명시된 1인만 지원 (질의 응답 시간 가능)

2. 지원 항목: 교통비, 등록비, 식대, 숙박비

- ① 교통비
 - ✓ 해외 학술대회: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 항공 왕복 운임
해외 현지 교통비: 학술대회 기간 내 1인 최대 15만원 지원
공항-숙소-행사장 간 교통비(1일 왕복 1회 한정)
 - ✓ 국내 학술대회: 목적지까지 국내 항공료(이코노미클래스), KTX, 우등고속버스
- ② 등록비: 사전등록 원칙
- ③ 식 대: 1인 3식, 1인당 1식 최대 10만원, 1일 총 15만원 이내
- ④ 숙박비: 미니바, 영화, 세탁,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
기간은 학술대회 개최 1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지원
 - ✓ 해외 학술대회: 1박당 35만원 이내 (VAT 포함)
 - ✓ 국내 학술대회: 1박당 20만원 (VAT 포함)

3. 정산 서류 제출

(1) 결과 보고서 및 참석 증빙자료

- 개인별 지출 내역서와 결과 보고서 (반드시 인쇄 후 서명하여 제출)
- 참가자의 자격 및 학술대회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실비의 영수증
- 정산 시 학술대회 시작 전일(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) 외환은행 최초고시가 환율 적용
- 법인카드 사용 시 정산 불가

(2) 참가 자격 증빙: 초록 채택 결정 통보문

- 학술대회 주최측 발송 선정 메일 및 초록 요약 내용 등
- 지원자격, 발표 주제, 일정(날짜, 시간), 장소 기재 필수

(3) 등록비: 학회 발행 영수증(금액 확인 가능한 학회 발행 서류), 신용카드 영수증

- 사전등록 원칙
- 송금한 날짜 기준환율 적용 한화 금액 또는 청구영수증 금액 적용
- 등록비에 포함된 식비는 식비로 지원, 식대와 중복지원 불가
- 등록비 지원받지 않더라도 제출

(4) 숙박비: 호텔 인보이스(체크인/아웃 및 상세내역 기재), 신용카드 영수증

- 국내: 1박 당 20만원 / 해외: 1박 당 35만원 이내 (세금 및 봉사료 포함)
- 학술대회 개최 1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지원
- 숙박비에 포함된 식비(조식 등)은 식비로 지원
- 학술대회 개최 국가/도시 다른 경우 지원 불가
- 지원 불가 항목: 미니바, 영화, 세탁, 전화 등 숙박 부수비용

(5) 교통비-항공료: 보딩패스 및 E-티켓, 신용카드 영수증

-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(스탠다드) 국제항공 왕복운임
- 개인 마일리지로 좌석 업그레이드 시 마일리지 사용 내역 첨부 (미 제출 시 정산 불가)
- 학회 전일 도착~종료 다음날 출발까지 인정
장거리 비행의 경우 학술대회 2일 전까지 인정 가능하며, 3일 이상 조기 출발 시
자필 사유서 필수 제출 및 사유에 따라 항공편 지원 불가
- 항공료 정산 받지 않아도 필수 제출
- 해외 학회 참가 시 국내 이동 교통비 지원 불가.

(6) 교통비-현지교통비: 신용카드 영수증

- 이용시간 및 출발지-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
- 공항-숙소, 숙소-행사장, 행사장-공항 등 1일 왕복 2장 인정
- 학술대회 기간 동안 최대 15만원 지원
- 렌터카 지원 가능(현지 교통비 상한 15만원 동일 적용)

(7) 식비: 신용카드 영수증

- 식사 시간대에 1식 1장만 인정
(예시: 중식 시간대에 식사와 커피 등 음료 영수증 2장이 있을 경우 1장만 인정)
- 1일 3식, 1식 최대 10만원, 1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가능
- ~12시까지: 조식 / 12시~18시: 중식 / 18시 이후: 석식
- 식음료대 이용 시간 애매할 경우 식사 간 4시간 이상 확인